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정보기술(IT) 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인력비율 미충족
과 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총 임직원수의 5%이상 (0명)	정부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2.5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0% (0명)	0% (0명)	28% (9.9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당사는 대고객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소규모 기업임.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법인대상으로 영업을 수행 중으로 개인고객이 없음에 따라 영향 없음.

6. 금융 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ISAC를 연계하지 않고 있음

2021. 01. 31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민철 (인)

